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장

공보

제546호 2018. 03. 08.(목)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18-4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 고시——2

○ 사천시 고시 제2018-4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 고시 ---------3

○ 사천시 고시 제2018-4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완료 사항 고시————4

○ 사천시 고시 제2018-52호 관률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고시----------5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18-357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7

회람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831-2217 / FAX 831-6012

고 시

사천시 고시 제 2018-4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 3. 8.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승인일자) : 제2017-10호(2017. 10. 24.)
2.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서)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공사 내용
   - ○ 중촌항 선착장 정비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 경남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908-26번지선 공유수면
5. 공사완료 신고수리일자
   - ○ 2018. 2. 22.

고 시

사천시 고시 제 2018-4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 3. 8.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승인일자) : 제2017-13호(2017. 10. 24.)
2.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서)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공사 내용
   - ○ 저도항 선착장 정비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 경남 사천시 마도동 151-11번지선 공유수면
5. 공사완료 신고수리일자
   - ○ 2018. 2. 22.

고 시

사천시 고시 제 2018-4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완료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완료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8. 03. 08.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허가일자) : 제2017-11호(2017. 12. 14.)
2.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서)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 성 명 : 프라임산업개발(주) 대표 김종진
   - ○ 주 소 :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대교로 699-1
3. 공사 내용
   - ○ 물량장 설치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1122번지선 공유수면
5. 준공검사 확인증 발급일자
   - ○ 2018. 02. 26.

사 천 시 공 보

제546호(5)

고 시

사천시 고시 제2018- 52호

관률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고시

사천시에서 시행할 관률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9조에 따라 시행계획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3. 7.

사 천 시 장

1. **사 업 명** : 관률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2. **위　　치**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두량리 일원
3. **사업의 목적** : 배수개선사업을 통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농경지를 보호하여 영농 편익을 도모코자하며, 자연재해로부터 주민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4. **사업의 내용 및 구역**

가. 사업의 내용

- 중앙배수로 정비 L=548m, B=3.0~7.0m
- 농로정비(2개소) L=545m, B=4.5m
- 배수로정비 L=92m
- 부대공사 1식

나. 사업의 구역 :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두량리 일원

5. 사 업 비 : 800백만 원(국비 640, 도비 48, 시비 112)

6. 사업기간 : 2018. 3. ~ 2019. 10(20개월)

7. 사업의 효과 : 관률지구의 침수피해 및 재해예방

8.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 사천시장

9.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편입토지조서

연번	위치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권리의 종류 및내용	비고
	면리	지번		대장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1	사천읍 두량리	273	답	2,352	52	박*순	사천읍 수석리 497-2*				
2	사천읍 두량리	289	답	3,482	83	유*상	사천읍 두량리 23*				
합 계											

10. 관계도서의 비치 및 열람장소 : 사천시청 건설수도과(전화 055-831-3275)

사 천 시 공 보

제546호(7)

공 고

사천시 공고 제2018 - 357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의한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동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8. 3. 8.

사 천 시 장

1. 공 고 명 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8. 3. 8. ~ 2018. 3. 23.(15일간)
3. 공 고 대 상

신청대상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일자	운행정지 사유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17수9173	K7	김*실	2018. 3. 5.	소유자요청(불명자 운행)

4. 공 고 내 용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공고하오니,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벌칙)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교통행정과(055-831-3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